

2026/27

항공교통안전관리자 교통법규

엠북 교통법규

공부혁명!
mbook.kr

- ★ PDF 전자책
- ★ 법, 시행령, 시행규칙 종합 정리
- ★ 최근 법령 신설, 개정 내용 반영
- ★ 4시간 57분 완성

도서명 : 항공교통안전관리자 교통법규

ISBN : 979-11-7393-291-5

발간일 : 2026-07-07

형식 : 전자책(PDF)

저자 : 김병연 교수

출판사 : 엠북

홈페이지 : <https://www.mbook.kr/>

이메일 : by4782@gmail.com

정가 : 23,000원



항공교통안전관리자 교통법규

[목차]

제1편 교통안전법(p3)

제2편 항공안전법(p73)

제3편 항공보안법(p198~231)

[비고]

- 회색 형광펜은 법조문 제목
- 노란색 형광펜은 암기코드 등
- 검은색은 법
- 보라색은 시행령
- 갈색은 시행규칙
- 초록색은 최근(1~2년내) 개정, 신설된 내용
- 붉은색은 시행예정

[참고] 교통안전관리자 출제 기준

- 교통법규는 법, 시행령, 시행규칙 모두 포함
- 법규과목의 시험범위는 시험 시행일 기준으로 시행되는 법령에서 출제 됨
- 교통안전법은 총칙, 제3장 및 제5장 이하의 규정 중 교통수단운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과 관련된 사항만을 말함

(Copyright) 공부혁명 엠북(mbook.kr)

제1편 교통안전법

(이하 법)

[목차]

제1장 총칙(p5)

제2장 교통안전정책심의기구(p11)

제3장 국가계획 등(p11)

제4장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시책(p19)

제5장 교통안전에 관한 세부시책(p21)

제6장 보칙(p67)

제7장 벌칙(p71)

[용어/약어]

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

부령은 국토교통부령

국가등은 국가, 지자체

지정기관장은 지정 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는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시, 군, 구

지자체장(시도지사등)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설치자등은 교통시설을 설치, 관리, 운영하는 자(교통시설설치·관리자)

국가계획은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지역계획은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시도계획은 시도교통안전기본계획

시군구계획은 시군구교통안전기본계획

국가시행계획은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

지역시행계획은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

시도시행계획은 시도교통안전시행계획

시군구시행계획은 시군구교통안전시행계획

교통안전은 육상교통, 해상교통, 항공교통의 안전

거부등은 거부, 기피, 방해

교통기관은 교통행정기관

정보체계는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

공단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도로공단은 한국도로교통공단

진단기관은 교통안전진단기관

견인차는 견인자동차

화물운송업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운수업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가맹업은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여객운송업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여객운수업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

택시업은 개인택시운송사업

제1장 총칙

1~11조

1. 목적

- 교통안전에 관한 국가등의 의무, 추진체계, 시책 규정
- 종합적/계획적 추진해 교통안전 증진

2. 정의

가. 교통수단

- 사람 이동, 화물 운송에 이용되는 다음 운송수단
 - 1) 차량
 - 차마, 노면전차, 철도차량(도시철도 포함) 궤도에 의해 교통용으로 사용되는 용구 등 육상교통용 모든 운송수단
 - 2) 선박
 - 선박 등 수상/수중 항행에 사용되는 모든 운송수단
 - 3) 항공기
 - 항공기 등 항공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운송수단

나. 교통시설

- 도로, 철도, 궤도, 항만, 어항, 수로, 공항, 비행장 등
- 교통수단의 운행, 운항, 항행에 필요한 시설과 이에 부속되어,
- 사람의 이동, 교통수단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행, 운항, 항행을 보조하는,
- 교통안전표지, 교통관제시설, 항행안전시설 등 시설, 공작물

다. 교통체계

- 사람/화물 이동/운송을 위해,
- 개별적이나 유기적 연계된,
- 교통 수단/시설 이용, 관리, 운영체계나 관련 산업/제도

라. 교통사업자

- 교통 수단/시설/체계 운행, 운항, 설치, 관리, 운영
 - 1) 교통수단운영자
 - 여객운수업자, 화물운수업자, 철도사업자, 항공운송사업자, 해운업자 등 교통수단을

이용해 운송 관련 사업

2) 설치자등

3) 이외에 교통수단 제조사업자, 교통관련 교육, 연구, 조사기관 등 교통수단, 교통시설, 교통체계 관련 영리/비영리 활동

마. 지정행정기관

- 교통수단, 교통시설, 교통체계 운행, 운항, 설치, 운영 등 지도/감독, 관련 법령/제도
관장 다음 중앙행정기관

- 재정경제부, 교육부, 법무부
- 행안부, 문화부, 농림부
- 산업부, 보건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고용부, 성평등가족부, 국토부
- 해수부, 기획예산처, 경찰청
- 총리 지정 중앙행정기관

바. 교통기관

- 법령에 의해 교통수단, 교통시설, 교통체계의 운행, 운항, 설치, 운영에 관해
교통사업자를 지도/감독하는 지정기관장, 지자체장

사. 교통사고

- 교통수단 운행, 항행, 운항 관련 사람 사상, 물건 손괴

아. 교통수단안전점검

- 교통기관이 법, 관계법령에 따라 교통수단의 위험요인 조사, **점검**, 평가

자. 교통시설안전진단

- 교통안전 조사, 측정, 평가 전문 **진단**기관이 교통시설 위험요인 조사, **측정**, 평가

차. 단지내도로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 대학/전문대학 등에 설치
-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 등 통행로로서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것

카. 기타

- 운전자등은 차량 운전자, 선박/항공 승무원등
- 자료등은 교통사고조사와 관련된 자료, 통계, 정보

3. 의무

가. 국가 등

- 국가는 국민, 지자체는 주민 생명, 신체, 재산 보호
- 국가는 교통안전 종합 시책, 지자체는 지역에 맞는 교통안전 시책 수립/시행
- 국가등은 지역개발, 교육, 문화, 법무 등 계획/정책 수립시 교통안전 배려

나. 설치자등

- 교통안전표지 등 시설 확충/정비 등 교통안전 확보

다. 교통수단 제조사업자

- 법령에 따라 구조/설비/장치 안전성 향상 노력

라. 교통수단운영자

- 법령에 따라 안전 운행, 항행, 운항 노력

마. 차량운전자등

- 법령에 따라 안전운행 점검
- 보행자, 자전거이용자 주의

바. 선박승무원등(도선사 포함)

- 법령에 따라 출항전 검사
- 기상/해상 조건, 항로표지, 사고 통보 확인

사. 항공승무원등

- 법령에 따라 운항전 확인
- 항행안전시설 기능장애 보고

아. 보행자

- 법령 준수, 육상교통에 위험/피해 없게 노력

4. 국가등의 재정 및 금융조치

가. 예산 확보, 재정지원 강구

나.交通安全장치(운행기록장치,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1) 대상

- 여객/화물 자동차운송사업자
- 가맹업자
- 운행기록장치 장착 차량 제외한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2) 장착 의무화할 때 비용 지원 가능

- 예산내 자금 보조/용자
- 장차 증명 서류 첨부해 지자체장에 지원 신청
- 비용 지원한 때 장차여부 점검 가능

5. 국회에 대한 보고 등

가) 정부는 매년 국회에 정기국회 개회 전 교통사고 상황, 국가계획과 국가시행계획 추진 상황 등 보고서 제출

나) 권고 및 보고

- 국가교통위원장은 지정행정기관장에 국가계획, 국가시행계획 추진과 교통사고 방지 신정책 실시 권고 가능
- 권고받은 기관장은 위원장에 추진계획 보고 요

다) 전문위원

- 국가교통안전실무위에 3명내 둘 수 있다
- 국가교통위, 실무위가 요구시 출석해 발언

라) 수당/여비

- 전문위원과 시군구 교통안전위원회 예산내 지급 가능
- 예외)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해 출석시

6. 다른 법률과의 관계

- 교통안전에 관해
- 다른 법률 제정/개정시 법 목적에 부합되게 함
- 다른 법률에 특별규정 없으면 법 따름

제2장 교통안전정책심의기구

12~14조

1. 국가교통위

- 교통안전 주요 정책, 국가계획 심의

2. 지방교통위와 시군구교통안전위

가) 지역별 교통안전 주요 정책과 지역계획 심의

나) 시군구교통안전위

- 위원장은 시군구

-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 포함 20명내

- 위원은 교통안전 행정기관 공무원, 교통안전 지식/경험 풍부한 자 중 시군구가 임명/위촉

- 이외 조례로 정함

3. 협력

- 상기 위원회는 필요시 행정기관장, 공공기관장, 관계인에 자료, 의견, 협력 요청

제3장 국가계획 등

15~21조

1. 국가계획

- 장관은 5년 단위로 수립 의무

가. 내용

- 중장기 종합정책방향
- 육상, 해상, 항공 등 부문별 교통사고 발생현황과 원인 분석
- 교통수단, 교통시설별 교통사고 감소목표
- 교통안전지식 보급, 교통문화 향상
- 정책 추진성과 분석/평가
- 부문별 전략
- **고령자/어린이 등 교통약자 교통사고 예방**
- 부문별, 기관별, 연차별 세부 추진, 투자계획
- 교통안전표지, 교통관제시설, 항행안전시설 등 교통안전시설 정비/확충
- 전문인력 양성
- 투자사업계획, 우선순위
- 지정행정기관별 교통안전대책 연계, 집행력 보완 등

나. 수립

- 1) 장관은 **수립(변경)**지침 작성 요
 - **계획연도 시작 전전년도 6월말까지** 지정기관장에 통보
 - 지정행정기관별 교통안전 주요 계획/시책 포함
- 2) 지정기관장은 **계획연도 시작 전년도 2월말까지** 장관에 계획안 제출
- 3) 장관은
 - a) 제출받은 계획안을 **다음**을 검토해 종합/조정해 국가계획안 작성

- 정책목표
- 정책과제 추진시기
- 투자규모
- 기관별 협의사항

b) 국가교통위 심의 거쳐 **계획연도 시작 전년도 6월말까지** 확정

c) **20일내** 지정기관장/시도지사에게 통보, 인터넷 게재 등 공고

2. 국가시행계획

가. 지정기관장

- 국가계획 집행을 위해 매년 시행계획안을 수립해 **10월말까지** 장관에 제출

나. 장관

1) 제출받은 계획안을 국가계획에 따라, **다음을 검토**해 종합/조정해 국가시행계획안 작성

-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과 부합 여부
- 기대 효과
- 소요예산 확보 가능성

2) 국가교통위 심의 거쳐 **12월말까지** 확정

3) 지정기관장과 시도지사에게 통보 및 공고

3. 지역계획(시도계획과 시군구계획)

가. 시도지사는 국가계획에 따라 시도계획, 시군구는 시도계획에 따라 시군구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

- **육상교통안전 중장기 종합정책방향과 안전수준 향상 시책 포함**

나. 장관, 시도지사는 수립 지침을 작성해 시도지사, 시군구에 통보 가능

다. 시도지사는 지방교통위, 시군구는 시군구교통안전위 심의 거쳐 계획연도 시작 전년도 10월말까지 확정

라. 20일내 시도지사는 장관, 시군구는 시도지사에 제출 후 공고

마. (24년 7월 시행) 수립/변경시 위원회 심의 전 주민/전문가 의견 청취

1) 시도지사등은

- 지역계획안 주요 내용을 2개 이상의 지역 일간신문과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고, 일반인에 14일 이상 열람하게 해야 함
- 공청회 개최 가능

2) 열람기간내 의견서 제출 가능

- 시도지사등은 열람기간 종료 60일내 검토 결과 통보

4. 지역시행계획

가. 수립

- 지자체장은 지역계획 집행을 위해 매년 수립/시행
- 시행계획 수립한 때 시도지사는 장관, 시군구는 시도지사에 제출 후 공고
- 12월말까지 다음 연도 시도, 시군구시행계획 수립
- 시군구는 1월말까지 시도지사에 시군구시행계획과 전년 실적 제출
- 시도지사는 종합/정리해 2월말까지 장관에 시도시행계획과 및 전년 실적 제출

나. 추진실적 세부사항

1) 단위 사업별 추진실적

- 예산사업은 사업량, 예산집행실적 포함
- 계획미달사업은 사유, 대책 포함

2) 추진상 문제점, 대책

3) 교통사고 현황/분석

a) 연간 교통사고 발생건수, 사상자 내역

b) 교통 수단별/시설별 교통안전정책 목표 달성 여부

- 관리청이 다르면 따로 구분

c)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안전정책 목표 달성 여부

d) 교통사고 분석/대책

- 교통수단별, 유형별, 월별, 요일별, 시간별, 장소별, 운전자/피해자 성별/연령층별 사고 건수/원인

- 사고 원인 분석에 필요한 사항

- 유형별 사고 예방 대책

e) 교통문화지수 향상 노력

f) 지역별 추진 실적

5. 국가계획, 국가시행계획, 지역계획의 변경

- 수립 절차 준용

- 예외: 다음의 경미한 변경

가) 사업규모 10/100내 변경

나) 시행기한 범위내 단위사업 시행시기 변경

다) 계산 착오, 오기, 누락, 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없고 변경 근거 분명